

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등록) 중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3조(의석 배정) 제2항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제1항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8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제1항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등록)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 증서를 <u>의회사무국</u> 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(등록) _____ _____ <u>의회사무국</u> _____
제3조(의석배정) ① (생략)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<u>사무과장</u> 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— <u>사무과장</u> _____ _____
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<u>사무과장</u> 이 서명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.	제50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_____ _____ _____ <u>사무과장</u> _____ _____ _____
제8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<u>사무과장</u> 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	제84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_____ _____ <u>사무과장</u> _____ _____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